

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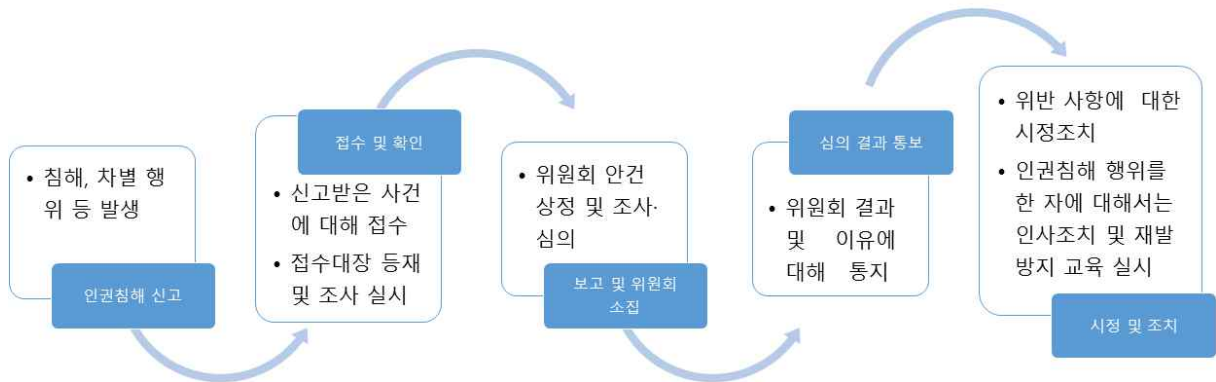
□ 목적

- 임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해당 내용을 접수·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임직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성

-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→접수→진행→피드백의 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,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
- 인권침해 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

□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



1단계. 인권침해 신고

-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온라인/오프라인으로 신고한다.

2단계. 접수 및 확인

-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접수대장에 등재하되,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정도의 수준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접수대장에 등재된 사건은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.
-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 및 위원장에게 통보한다.

3단계. 보고 및 위원회 소집

- 위원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안전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
-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·심의 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연구원 소관사항이 아니라 고 판단되는 경우, 관계기관(국가인권위원회 등)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있다.
 - 신고인·피해자·피신고인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,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
 -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
 -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
 -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

4단계. 심의 결과 통보

-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·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결정을 하며,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
 -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 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 치를 권고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5단계. 시정 및 조치

- 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인권침해 신고서

신고자	성명		소속		직위 (직급)	
신고사항						
피해 일시 및 장소						
피침해자						
침해자						
침해내용						
20						
신고자 (서명)						